



제 418회 국회 (정기회)
제1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예술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근거 마련 >

■ 소병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096호)

2024. 11.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원모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소병훈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 2024. 8. 22.

다. 회 부 일 : 2023. 8. 2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한 ‘2021년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예술인의 국민연금 가입 비율은 54%에 불과함. 예술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고 국민연금 가입률도 저조하여 노후 대비가 충분히 되어 있지 못한 상황인 경우가 많음.

예술인의 경제적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통해 예술인이 부담하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나, 법적인 근거가 없어 사업의 지속성이 담보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예술인이 내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예술인의 노후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다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요지

개정안은 국가가 예술인의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설></u>	<u>제7조의2(예술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국가는 예술인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술인이 내는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u>

2. 검토의견

현행법 제4조¹⁾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0조²⁾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예술인의 사회보장 확대 지원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예술인에 대한 사회보장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예술인 복지재단은 예술인 및 문화예술사업자가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음.

[예술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사업]

구분	주요 내용
지원대상	-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중 표준계약을 활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프리랜서, 근로자인 예술인) -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한 문화예술사업자 - 표준계약 관련 교육을 이수한 예술인(프리랜서)
지원내용	- 표준계약 체결 및 계약이행여부 확인: 해당기간 동안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의 30~50% 지원 - 프리랜서 예술인이 재단의 표준계약 교육 이수: 보험료의 50% 지원(최대 3개월)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 1) 「예술인 복지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2) 「예술인 복지법」 제8조(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설립 등) ① 예술인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10조(재단의 사업)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예술인의 사회보장 확대 지원 (이하 생략)

그러나 현행법은 예술인 사회보험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료에 대해서만 제7조³⁾에 그 지원 근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에 관해서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는바, 개정안은 예술인이 부담하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4대 사회보험⁴⁾ 중 국민연금은 고용 지위와 소득이 불안정한 경우가 많은 예술인의 노후생활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이나, 2021년 기준 예술인의 국민연금 가입 비율은 54%(지역가입자 28.2%, 직장가입자 25.8%)⁵⁾로 저조한 편임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예술인의 국민연금 가입을 유도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취지가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법」⁶⁾에 근거하여 직종에

3) 「예술인 복지법」 제7조(예술인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호) ① 예술인의 업무상 재해 및 보상 등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8조에 따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제1항에 따라 예술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예술인이 납부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4)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5) 2021년 예술인 실태조사 참조

6) 「국민연금법」 제100조의3(사업장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① 국가는 제8조에 따른 사업장가입자로서 국민인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 및 부담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사업장에 고용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의 소득을 얻을 것

2. 근로자의 재산 및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0조의4(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① 국가는 국민인 지역가입자로서 제91조제1항 제1호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하고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1. 연금보험료 납부를 재개할 것. 다만,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아 납부하

상관없이 예술인을 포함한 저소득 국민연금 가입자에 대해 ‘두루누리, 실업크레딧,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사업으로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어 저소득 예술인의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예술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라는 개정안의 취지가 일부 달성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또한, 특정 계층에 대해 개별법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한 사례로는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⁷⁾에 따른 농어업인 건강·연금 보험료 지원 사업이 유일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은 발의 당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인한 농어업인의 직접적인 소득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하여 제정⁸⁾되었음.

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재산 및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 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31조(국민연금보험료의 지원) 국가는 농어업인이 「국민연금법」 제88조제4항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국민연금보험료 중 100분의 50 이내의 금액을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8)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대안의 제안이유

세계무역기구의 협상 진전과 자유무역협정(FTA)의 확산에 따른 농산물시장의 개방으로 경제·사회적 어려움이 예상되는 농어촌에 대하여 보건의료기반의 조성 및 사회복지증진에 관한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제도 현황]

구분	두루누리 (사업장 가입자 보험료 지원)	실업크레딧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농어업인 보험료 지원
지원 대상	- 10인 미만 사업장에 고용된 월 소득 230만 원 미만 근로자 - 지원 신청 직전까지 1년간 사업장 가입 이력이 없는 신규 근로자 (일용근로자는 6개월)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실업) 급여 수급자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납부에 외자 * 납부예외 사유가 실직, 사업중단, 휴직인 경우에 한정, 2022년 7월 1일 이후 납부 재개한 경우에 한정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또는 지역임의계속 가입자 중 농어업인 인정 기준해당자 * 인정 기준: 1,000㎡ 이상의 농지 경영/경작, 연간 농·수산물 판매액 120만원 이상, 1년 중 90일 이상 농업 또는 60일 이상 어업, 양식업 종사자 등
지원 내용	보험료의 80%를 최대 36개월까지 지원 (기존 가입자인 경우 지원 기간 합산)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인정소득 기준 보험료의 75%를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인정소득: 실직 직전까지 받은 3개월간 평균 급여의 50% (최대 70만 원 인정)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월 보험료의 50% 지원 (최대 4만 5천원)	월 보험료에 따라 일정 액수 지원 - 월 보험료 9만원 초과: 4만 5천 원 지원 - 월 보험료 9만원 이하: 50% 지원
관련 법령	국민연금법 제100조의3	국민연금법 제19조의2, 고용보험법 제55조의2	국민연금법 제100조의4	농어업인보전복지 증진법 제31조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는 소득이 낮고 불안정한 예술인에 대해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고, 타 직종과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국민연금법」의 요건에 맞춰 지원 범위를 규정할 수 있다는 입장임.

반면, 기획재정부는 「국민연금법」상 예술인을 포함하여 재산·소득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금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있고, 예술인을 제외한 타 직역 종사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감안할 때 개정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379

참고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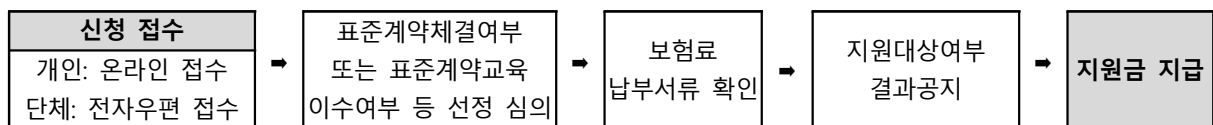
예술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사업

□ 목적

-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 지원을 통한 예술직업군의 사회안전망 강화
- 표준계약서 사용 및 보급 활성화를 통한 공정한 계약 체결 문화 정립

□ 사업 내용

- **(지원대상)**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중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프리랜서, 근로자인 예술인) 및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한 문화예술사업자, 표준계약 관련 교육을 이수한 예술인(프리랜서)
- **(지원내용)**
 - 예술활동에 대한 표준계약(서면계약) 체결 및 계약이행여부 확인 시 해당 기간 동안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의 30~50% 지원
 - 프리랜서 예술인이 재단의 표준계약 교육을 이수 시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의 50% 지원(최대 3개월)
- ※ 지원금 상한액(1인 1개월 기준): 프리랜서 예술인 46,350원*, 근로자인 예술인·사업주 각 27,820원**
- * 국민연금공단 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와 동일 기준((국민연금 기준월소득액 1,030,000원 기준 납부보험료(92,700원)의 50%))
- ** 기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과 유사 기준(('24년 최저임금 월 2,060,740원 기준 납부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또는 사업장 부담분)(92,733원)의 30%))
- **(지원범위)** 전년도 3/4분기~ 당해연도 2/4분기 보험료 부과분
- **(지원방법)** 분기별 보험료 납부 확인 후 환급 지원
- **(지원절차)** 신청 접수 이후 심의·지원까지 약 3개월 소요



□ 예산 및 지원 현황

연 도	예 산	지원 인원	비 고
2021년	500백만원	1,294명	
2022년	500백만원	1,545명	
2023년	500백만원	1,561명	
2024년	500백만원	1,103명	'24.8월 현재

※ 2025년 정부안 기준, 600백만원 반영 중